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, 폐문부재,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11. 23.

거 제 시



자연공원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고

- 1. 공고기간 : 2017. 11. 23 ~ 2017. 12. 07.(15일간)
- 2. 송달대상 : 박○순, 정○순, 허○영, 이○용, 문○주, 김○국
- 3. 송달내역

자연공원법 위반자		위반일시	위반내용	과태료	관련법규	반송사유
성명	주소					
박○순	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**, ***호(장승포동)	2016.12.03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	117,0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8호	수취인불명, 폐문부재
정○순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78번안길 *(다대동)	2016.12.03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	117,0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6호	폐문부재
허○영	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7길**,***동 ***호 **아파트	2016.11.12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	117,0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6호	수취인부재
이○용	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86번길 *(은천동)	2017.05.17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	106,6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8호	주소불명
문○주	부산광역시 남구 양지골로 ** (감만동)	2017.02.25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	111,0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6호	수취인불명, 이사불명
김○국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92번가길 *(양정동)	2017.01.01.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	114,600	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6호	폐문부재

4. 문의처 : 거제시청 산림녹지과 (전화 055-639-4345, 팩스 055-639-4329)

5. 기 타

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
는 중간산금이 최대 60개월 부과되오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